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항만안전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주기를 개선하여 종사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항만운송 참여자의 교육관리 책임을 위해 부과되는 과태료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또한, 폭염, 폭우, 폭설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현재 항만안전점검관은 책임급과 선임급(전문임기제 나급)으로 운영중이나, 항만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확충한 전문임기제 다급 인력의 직급과 경력요건을 신설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교육 이수일 기준의 변경(영 제5조제1항제2호)

정기안전교육 이수일을 신규안전교육 또는 이전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매년 받도록 하던 것을 신규안전교육을 이수한 자가 이수 연도 다음 해부터 매년 1회 받도록 개정.

나. 자체안전관리계획 내용에 악천후 대책 포함(영 제6조제1항제5호)

기후변화 등으로 폭염, 폭우, 폭설 등 악천후가 발생하는 날이 많아

짐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항만하역업체에서 수립하는 자체안전관리계획에 폭염,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시 근로자 안전대책을 포함토록 개정.

다. 일반급 항만안전점검관 직급 신설(별표 2)

현재 항만안전점검관은 선임급(전문임기제 나급)으로 운영중이나, 전문임기제 다급 안전점검관리 인력 확충을 위해 직급 및 자격요건 신설.

라. 항만운송 참여자의 안전교육 미실시 과태료 합리화(별표 5)

현행 규정은 소속 종사자 중 교육 미이수자가 발생할 경우 미이수 인원 수와 관계없이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미이수자 1인당 1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에게 제1호의 신규안전교육 또는 이전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매년”을 “로서 제1호의 신규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 연도의 다음 해부터 매년 1회”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폭염, 폭설, 폭우 등 악천후 시 항만운송종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별표 2 비고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일반급 항만안전점검관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2에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일반급 항만안전점검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분야 학과의 교수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안전교육실시기관에서 항만안전 분야 교수요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항만안전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항만안전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산업안전·항만물류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별표 5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 중 교육 미이 수자 1명당 10만원	교육대상 근로자 중 교육 미이 수자 1명당 15만원	교육대상 근로자 중 교육 미이 수자 1명당 20만원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동 시행령 시행 전 당해연도 정기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는 당해연도 신규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 교육) ① 항만운송 참여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5조(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 교육) ①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기안전교육: 항만운송 관련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항만운송 종사자(제3호의 기초안전교육 대상자는 제외한다)에게 제1호의 신규안전교육 또는 이전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매년 실시하는 교육	2. ----- ----- --로서 제1호의 신규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 연도의 다음 해부터 매년 1회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등)	제6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u>폭염, 폭설, 폭우 등 악천후 시 항만운송종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u>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별표2]

나. 선입급 항만안전점검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분야 학과의 교수로 3년 이상 재직 한 사람 2) 안전교육실시기관에서 항만안전 분야 교수요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항만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항만안전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산업안전·항만물류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신설>

[별표5]

가.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제1호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	-----------	--------	--------	--------

[별표2]

나. 선입급 항만안전점검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분야 학과의 교수로 3년 이상 재직 한 사람 2) 안전교육실시기관에서 항만안전 분야 교수요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항만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항만안전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산업안전·항만물류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일반급 항만안전점검관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일반급 항만안전점검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분야 학과의 교수로 1년 이상 재직 한 사람 2) 안전교육실시기관에서 항만안전 분야 교수요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항만안전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항만안전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산업안전·항만물류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5]

가.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제1호	교육 대상	교육 대상	교육 대상
		근로자 중 미이수자 1명당 10만 원	근로자 중 미이수자 1명당 15만 원	근로자 중 미이수자 1명당 20만 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	
연 락 처	(044) 200 - 5777